

장애학생 도우미제도 운영 내규

개정 2016.3.1.

제 1 조(목적)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(이하 본교라 한다)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애학생 도우미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“도우미제도”라 함은 장애학생이 학습하는 데 물리적인 한계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학습도우미, 생활도우미, 특별도우미를 두어 학교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.
- “도우미”라 함은 본교 재학생 중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발되어 제3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를 말한다.
- “대외활동”이라 함은 수강과목 학점 이수에 필요한 인턴십과 본교에서 주관하는 각종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외부 활동을 말한다.

제 3 조(도우미의 역할)

- 학습도우미는 장애학생의 수업 및 학습 보조, 자료 검색, 문헌 찾기, 도서 대출, 수화 및 통역 지원, (시각장애인) 대체 자료 입력, 강의 및 시험 대필지원, 이동지원, 기타 생활지원의 역할을 수행한다.
- 생활도우미는 장애학생과 함께 거주하여 생활에 필요한 가사지원, 식사 및 화장실 보조, 이동지원, 기타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함께 거주하지 못할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동의를 받아 학기 내 일정시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여 상기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. 세부적인 도우미의 역할은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장애학생과의 협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다.
- 특별도우미는 장애학생의 대외활동이나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안내를 받아 학습도우미와 생활도우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.

제 4 조(도우미 활동 혜택) 도우미 활동 혜택 및 선발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한다.

구분	혜택(택일)	선발제한	비고
학습도우미	활동비(시급) 또는 봉사시간 인정 ※ 시급 및 근로최대 가능시간은 한국장학재단의 해당 학기 지침에 따름	1. 직전학기 12학점 이하 등록자 2. 직전학기 평점 2.0이하 3. 졸업유예자 4. 직전학기 성적조회가 불가한 자 5. 기존 도우미 활동자 중 경고 3회 이상 누적된 자 6. 외국인학생·대학원생 (단, 도우미요청 장애학생이 대학원생일 경우, 대학원생 지원가능)	실험, 실습, 프로젝트, 조별활동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도우미의 활동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활동 시간 인정 가능
생활도우미			-
특별지원도우미			활동내용 및 나이도에 따라 혜택 조정 가능

제 5 조(지원 대상) 장애학생 도우미는 본교 재학 중인 장애 1~3급 학생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학생지원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증(4~6급)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.

단, 심의 절차를 공정하게 하여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한다. 필요 시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심의 결과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 심의 전, 장애학생 본인의 의견(지원의 필요성)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

있다.

제 6 조(지원 기간) 장애학생에게 도우미를 지원하는 기간은 본교 재학기간에 한정한다. 다만, 졸업 유예기간 발생 시 최초 1년에 한해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 7 조(도우미 활동 혜택의 제한)

1. 도우미가 정해진 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장애학생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경고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도우미 장학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2. 장애학생의 필요에 의한 도우미 지원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도우미 제도를 악용하였을 경우 도우미 활동 중단 및 추후 선발을 제한할 수 있다.

부칙

본 내규는 201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